

재해보상 및 배상 규정

제정 2009.10.01 규정 제25호

개정 2010.01.12 규정 제48호

개정 2014.06.27 규정 제116호

개정 2014.09.30 규정 제1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가 된 경우 소요비용 보상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이외의 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2.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3. “순직”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4. “재해보상”이란 보험보상과 자체보상을 말한다.
5. “보험보상”이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하는 보상을 말한다.

6. “자체보상”이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공사가 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4.9.30>

7. “평균임금”이란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8. “안전사고”란 공사의 직원, 장비, 물자, 설비 등에 의한 신체상·재산상 피해사고를 말한다.

9. “배상사고”란 안전사고 중 법령상 또는 대법원 판례상 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말한다.

10. “합의배상”이란 민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행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11. “수급권자”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자를 말한다.

12. “재해보상 총괄부서”란 공사의 재해보상과 배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중대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2장 재해보상

제1절 총칙

제3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보상 또는 자체보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보험보상

제4조(보험가입 및 대리인 신고) ① 공사는 본사, 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 직제변경으로 지역본부가 신설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지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 신고 후,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재해보상 총괄부서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본사, 지역본부에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발생신고) ① 보험보상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사 재해보상 총괄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재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7조(보상신청)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는 재해발생시 수급권자는 산재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장하는 관할기관에 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의 종류 및 범위) 보험보상의 종류 및 범위는 산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자체보상

제9조(업무상 재해 인정) ① 업무상 재해는 공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재해

2. 삭제<2014.9.30>

제10조 삭제<2014.9.30>

제11조 삭제<2014.9.30>

제12조 삭제<2014.9.30>

제13조 삭제<2014.9.30>

제14조 삭제<2014.9.30>

제15조 삭제<2014.9.30>

제16조 삭제<2014.9.30>

제17조 삭제<2010.1.12>

제18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① 삭제<2014.9.30>

②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는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③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재해보상 총괄부서장과 협의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따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제19조(해외사무소 근무직원에 대한 특례) 해외지사, 해외사업단, 해외사무소, 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해외교육 파견, 출장 중인 직원이 공사의 예산으로 주재국법령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관한 주재국 보험 또는 국내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공상 또는 순직의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상범위 내에서 제3절의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 공사장

제20조(공사장의 승인) ① 직원이 순직하거나 공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장례를 공사장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사장의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소속부서장은 승인신청서에 재해내용, 공적사항, 그 밖에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장의절차) 장의절차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제22조(협의)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의 경우 가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장의비용) 공사장에 소요되는 장의비는 실비를 지급하며, 소요된 장의비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법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사가 수급권을 위임받아 수령한다. <개정 2014.9.30>

제4장 업무수행 피해보상

제24조(업무수행피해보상) ① 직원이 공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고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요구 및 행정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고란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재해보상 및 배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고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승인신청) 제24조에 따른 업무수행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서장이 재해보상 총괄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2. 관계자 조사보고서
3.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 : 판결문 및 이에 준하는 서면
4. 벌금 및 과료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법원의 납부명령서

5. 변호사의 보수, 합의배상금 및 제비용 : 변호사의 보수청구서, 합의서
6.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26조(보상범위) 형사피의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적정 범위내의 합의배상금
2. 벌금 및 과료
3. 변호사의 수임료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비용

제5장 제3자에 대한 배상

제27조(배상) 안전사고로 인하여 직원 이외의 자가 입은 신체상, 재산상 피해가 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배상한다.

제28조(배상사고처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은 즉시 합의배상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고 재해보상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배상청구서
2. 사고경위서(사고설명도면 또는 사진포함)
3.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서
4. 장애 및 노동력 상실정도에 대한 의사소견서

5. 재산상 손해내역서

6. 가족관계등록부

7. 인감증명서

8. 그 밖에 청구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29조(배상액의 결정) ①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결정기준은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배상합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상 인정된 배상액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과실상계)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배상사고가 쌍방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소송에 따른 배상)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의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에 따른 배상을 행한다.

제32조(사고관계자에 대한 구상) 공사가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로써 안전사고가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배상금에 대하여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재해보상 및 배상심의위원회

제33조(구성) ①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및 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재해보상 총괄담당 이사

2. 위원 : 재해보상 총괄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기획담당부서장, 법규담당부서장, 안전방재 주관부서장 및 노동조합대표 2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보상 총괄부서의 담당 팀(부)장이 된다.

제3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2014.9.30>

2. 삭제<2010.1.12>

3. 형사피의자 보상에 있어서의 부득이한 사고의 인정여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

5. 배상 후의 구상여부 및 구상금액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령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의견진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고당사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재심의) 위원회 심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재심의를 올릴 수 있다.

제39조(법률 등의 자문)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법률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2009.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해보상이 종결되지 않은 재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 중 이 규정보다 직원에게 유리한 조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0.1.12>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27>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공사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2015년 1월 1일까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